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201(본소), 2015다221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201, 2015다221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나4221, 2013나423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7. 16 선고 2012가단3080, 2012가단1269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중중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B

2. C

3. D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나4221(본소), 2013나4238(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J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회장으로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지 않은 총회의 결의서 등을 교부하면서 2006. 2. 22. 및 같은 해 3. 16.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외형상 원고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J을 대표자로 선임한 2002. 12. 1.자 총회결의가 상당수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소집되어 무효이므로 J을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J은 위 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수년간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대·내외적 업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J을 민법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과 사실상 대표자에 관한 법리나 대법원 판례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2864 판결 참조).

원심은, ① J은 종중의 정관, 토지 처분에 대한 결의서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일체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들은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위 법무사 또한 J으로부터 제시받은 위와 같은 서류를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외관상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A종중 회장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거나 J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A종중 회장 J'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수령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J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행위 등이 원고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종중 재산의 처분요건이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단이 위 판례들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